

1. 개정이유

현재 보행자 도로는 차량통행으로 인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일시적으로 인파가 급증하여 통행이 어려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음. 이에 보행자 도로의 결정시 고려해야 할 기준에 일시적인 통행량 증가를 고려하도록 하고,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피공간 확보 등을 통해 도심 내에서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고자 위한 것임

또한, 도시계획시설로 상업, 업무 기능과 환승센터가 연계되어 있는 복합환승센터가 열거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환승센터를 추가적으로 열거하여 법령상 일관성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승센터 설치를 지원하고자 위함임

2. 주요내용

가. 보행자 도로 결정기준 등 추가(안 제18조제1호, 안 제19조제2호 및 제4호, 안 제19조의2제1호, 안 제19조의3제3호)

- 1)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도로 결정기준에 평소의 보행자 통행량만이 아닌 급작스런 통행량 증가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2) 보행자 도로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대피공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, 보행자 도로에는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보행자도로 설치 기준에 명시함

나. 도시·군계획시설에 환승센터 추가하여 복합환승센터와의 법령 규정

상 일관성을 확보하고, 지방자치단체에서 환승센터 설치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1조제7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 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2항 중 “범죄”를 “안전사고와 범죄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지하도로의 침수방지시설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

제18조제1호 중 “많을”을 “많거나 각종 집회, 행사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량이 증가할”로 한다.

제19조제2호 중 “고려하여”를 “고려하여 보행환경의 안전을 제고하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보행공간이 조성되도록 할”을 “보행공간을 조성하되,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대피공간을 고려할”로 한다.

제19조의2제1호 중 “보행자의 통행이 많은”을 “보행자 통행이 많거나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”으로 한다.

제19조의3제3호 중 “등”을 “등 미끄러짐을 방지하고”로 한다.

제31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환승센터: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환승

센터

제68조제1호나목 단서 중 “제2조제2호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설비”를 “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설비”로 한다.

제81조제16호 전단 중 “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83조제9호 단서 중 “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 별표 1”을 “「유통산업발전법」 별표”로 한다.

제151조제2호 중 “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마목”을 “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바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의2(도시안전 및 건강) ① (생략)	제8조의2(도시안전 및 건강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도시·군계획시설은 <u>범죄</u>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민의 육체적·정신적 건강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	② ----- <u>안전사고와 범죄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7조(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) ①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	제17조(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) ①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4. <u>지하도로의 침수방지시설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</u>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8조(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) 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	제18조(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) ----- -----.
1.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<u>많을</u>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할	1. ----- ----- <u>많거나 각종 집회, 행사 등으로 인하여 보</u>

것	<u>행자의 통행량이 증가할</u> ----
	--
2. ~ 6. (생 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
제19조(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) 보행자전용도로의 구 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	제19조(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) ----- ----- ---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보행자전용도로의 위치, 폭, 통행량, 주변지역의 용도 등을 <u>고려하여</u> 주변의 경관과 조화 를 이루도록 다양하게 설치할 것	2. ----- ----- <u>고려하여 보행환경의 안전을</u> <u>제고하고</u> ----- 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소규모광장·공연장·휴식공 간·학교·공공청사·문화시 설 등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 접된 경우에는 이들 공간과 보행자전용도로를 연계시켜 일체화된 <u>보행공간이 조성되</u> <u>도록 할 것</u>	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보행공간을 조성하되,</u> <u>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대피공</u> <u>간을 고려할</u> ----- --
5. ~ 11. (생 략)	5. ~ 11. (현행과 같음)
제19조의2(보행자우선도로의 결 정기준) 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	제19조의2(보행자우선도로의 결 정기준) -----

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시지역 내 간선도로의 이면도로로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하기 어려운 지역 중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 설치할 것

2. ~ 4. (생략)

제19조의3(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)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·2. (생략)

3. 보행자의 통행 부분의 바닥은 블록이나 석재 등 보행자가 보행하는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고, 보행자우선도로가 일반도로의 보도와 교차할 경우 교차지점에는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바닥을 설치할 것

4. ~ 6. (생략)

제31조(자동차정류장) 이 절에서 “자동차정류장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~ 6. (생략)

-----.

1. -----

----- 보행자 통행이 많거나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19조의3(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) 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----- 등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-----

4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자동차정류장) ----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제68조(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)
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발전시설

가. (생략)

나. 전용공업지역·일반공업지역·준공업지역·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만 설치할 것. 다만,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설비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.

다. (생략)

2. ~ 4. (생략)

제81조(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) 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~ 15. (생략)

7. 환승센터: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환승센터

제68조(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)

-----.

1. -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-----

-----.

----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설비

-----.

다. (현행과 같음)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81조(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) -----
-----.

1. ~ 15. (현행과 같음)

16. 공동구안에는 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할 것. 이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상태가 공동구중앙통제시스템과 관할 소방관서에 동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17. ~ 19. (생략) 제83조(시장의 결정기준) 시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~ 8. (생략) 9. 준주거지역·중심상업지역·일반상업지역·근린상업지역·유통상업지역·준공업지역·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. 다만,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대규모점포(대형마트·전문점을 제외한다)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. 10. (생략) 제151조(종합의료시설) 이 절에서 “종합의료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	16. -----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 17. ~ 19. (현행과 같음) 제83조(시장의 결정기준) ----- -----. 1. ~ 8. (현행과 같음) 9.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별표----- ----- ----- -----. 10. (현행과 같음) 제151조(종합의료시설) ----- -----
--	--

의 시설을 말한다. 1. (생 략) 2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 <u>마목</u>에 따른 종합병원	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 <u>바목</u>-----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722